

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5일	
체납자	①사업장관리번호			③대표자	
	②상호·법인 명칭			전화번호	팩스
	④소재지			전자우편주소	
체납액내역	⑤체납액 총액 (⑥+⑦)		⑥고용보험 체납액	⑦산재보험 체납액 (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)	⑧체납기간
⑨분할납부 신청금액		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		월(총 회)	

분할납부 신청내용

분납 횟수	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(고용보험, 산재보험 및 임금 채권부담금 포함)	⑫납부기한	분납 횟수	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(고용보험, 산재보험 및 임금 채권부담금 포함)	⑫납부기한
1회			7회		
2회			8회		
3회			9회		
4회			10회		
5회			11회		
6회			12회		

분할납부 신청 사유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제1항·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○○○지사장 귀하

수수료

없음

유의사항

1.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.
 - ㉠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
 - ㉡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㉢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㉣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 - ㉤「어음법」 및 「수표법」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 - ㉥경매가 개시된 경우, 법인이 해산한 경우

작성방법

1. ①~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.
2. ⑤~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(임금채권부담금)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.
3.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.
4.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(1년 이내)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.
5. 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.
6.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.
7. ⑬란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